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2 거래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해지						
가입금액	· 1원 이상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자율 ('23. 7. 4. 기준, 세전)	· 주무부서에서 월 1회(1일)고시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금리	연3.27%	연3.41%	연3.56%	연3.21%	연3.21%	연3.19%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재예치	(DB) 가능 (DC, IRP) 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예금은 가입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뺀 원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자동재예치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나. 재예치 후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IRP(기업형, 개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 됩니다. 나.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분인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전 부분인출 지급액에 대하여 정해진 중도해지이자 지급 · 만기 전 부분인출 횟수는 2회 이내 · 부분인출 횟수의 예외 적용 사유(인출횟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 3회 이내에서 부분인출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해지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 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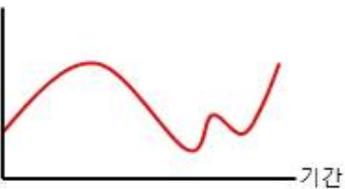
3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특별 중도해지 인정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③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④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⑤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⑥ 수탁자의 사임
 -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⑧ 퇴직연금 계약 관련 수수료의 징수
- ※ 위 각 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계약기간이 3월, 6월, 1년인 계약 :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내인 계약
 - 가.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1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 나. 예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2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 다. 예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3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

이 상품은 전북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b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특징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 시장금리 하락기 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 시장금리 상승기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